

• 특집 I > 특별대담 •

공증인법 개정과 대한공증협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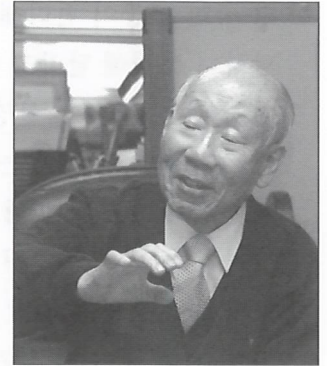
— 이재성 변호사에게 듣는다 —

□ 대담자: 나세근 대한공증협회 법제이사 □ 일시: 2008년 12월 29일 □ 장소: 동아합동법률사무소



※편집자 주 : 공증인 체계의 일원화, 선서인증제도 및 전자공증제도 도입, 공증협회의 강제 단체화 등을 골자로 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하여 「대한공증협회지」에서는 비인가단체였던 협회를 1999년 공증인법 개정노력을 통하여 새롭게 법정임의 단체로 출발하게 하는데 공헌을 하신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의 이재성 전 협회장님께 현행 공증인법 개정안에 관한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한 고견을 듣고, 향후 협회가 법정 강제단체가 된 이후 협회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하였습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건강이나 근황은 어떠신지요?



▷ 특별히 아픈데는 없지만, 근래에 다리가 좀 무거워졌어요. 더 심해지면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아직은 걸어다닐만 합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동네를 30분 정도씩 산책을 합니다. 2년 전부터는 체중관리를 위하여 매일 매일 디지털 체

중계로 체중을 체크하고 그래프로 작성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법정에 나가는 일은 될수록 피하고 있으며, 대신 공증사무는 항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속되어 계신 동아합동법률사무소는 변호사겸업 공증제도가 출범한 1971년, 고려합동법률사무소 등과 함께 최초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변호사겸업 공증제도의 원년멤버이신데요. 그 당시 변호사겸업공증제도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 변호사가 공증사무를 보기 시작한 것은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54호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당시 회장 홍승만 변호사)에서는 1970년 8월 8일 임시총회의 결의로 그러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당시 위원장 노재필 변호사)에 입법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임명공증인들은 그 입법이 부당하다 하여 반대하였고, 당시의 이호 법무부장관도 반대의견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 연말경 새로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배영호씨가 그 입법을 지지하여 주어 1970년 12월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의논할 때에는 이호 법무부장관의 반대로 변호사들의 청원입법은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되었는데, 정기국회 폐회 전에 법무장관이 경질되어 배영호씨가 취임하였습니다. 이 때 홍승만 변협회장은 때를 놓치지 않고 배 장관을 찾아가, 변호사 공증제도를 시행하는데 국가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

고 국민 대중이 편리해지는 좋은 제도인데 불구하고 전임 장관이 안된다고 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배 장관은 그 설명을 수긍할 수는 있으나, 일단 당정협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한 것을 내가 뒤집기는 곤란하니 홍 회장이 박 대통령을 설득하여,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하문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대답을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홍 회장은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수시로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이 모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박 대통령을 설득하게 하고, 박 대통령이 배 장관에게 그 청원입법의 가부를 물어 배 장관이 대통령에게 그 청원입법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여, 예정을 변경하고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 70년대부터 공증에 관한 저서나 논문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시고, 현재도 동아협동에서 공증 업무에 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께서서는 공증이란 어떠한 업무라고 생각되시어 중시하시게 되었는지요?

▷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방사법” 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공증제도를 잘 이용하면 민사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나 인증서 등이 확실한 증명력을 발휘하여 소송에서 억울하게 지는 일을 막아줄 것입니다.

■ 오랜 기간 공증업무를 해 오셨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공증업무에 있어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개선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본적인 점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공증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공증제도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점업공증제도가 시작된 1971년도의 전국의 공증건수는 31만 건이었는데 1974년에는 68만여 건, 1977년에는 108만여 건, 1980년에는 170만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변호사 공증이 시작되기 직전 3년간의 공증건수 추이를 보면 1968년에 12만여 건이 1971년은 19만 5천 건(변호사공증분 제외)으로 3년 사이에 54% 증가에 그쳤는데, 변호사 공증이 시작된 후 처음 3년 동안은 221% 증가, 그 다음 3년 동안에는 157% 증가, 그 다음 3년 동안에도 역시 157% 증가로 나타나서 폭발적인 증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변호사공증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사서증서에 인증문을 부여하는 경우 공증사무소에는 『인증부』라는 장부만 비치하여 두고 인증문을 부여한 사서증서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었는데, 변호사공증제도가 생기면서 변호사들이 만든 공증사무 지도위원회의 결의로 사서증서에 인증문을 부여할 경우 반드시 그 사서증서의 사본을 만들어 인증촉탁서 인증문 사본들과 합철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1984년 5월 9일 법무부령 제260호가 개정·공포될 때까지는 임명공증인은 사서증서사본과 인증문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인증한 경우에는 사서증서사본과 인증문의 사본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위 법무부령의 시행으로 임명공증인도 사서증서와 인증문의 사본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증실무가 법 규정보다 앞서나가게 된 것이지요.

■ 공증인들을 위한 지침서인 공증편람의 창간 및 이후 수정판 집필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증실무라는 명칭으로 책 명칭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공증사무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82년도 당시 어떤 점에서 편람을 편찬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실무지침서가 어떤 점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공증편람은 그 당시 협회 운영위원회 결의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규대 변호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윤중섭 변호사님과 제가 위원이 되어 실무에 관한 부분은 윤 변호사가 맡고, 공증제도의 개요와 실무와 관련된 이론해설을 제가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변호사공증제도 실시 10주년을 맞아 협회 차원에서 공증업무 담당자에게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여 공증업무도 개선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도의 개선과 실무경험의 축적에 의하여 수차 보충하여 왔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공증제도가 도입된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일반인들은 그 중요도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회가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공동으로 1주일을 공증주간으로 선정하여 대국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많은데요. 공증주간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 공증주간은 참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앞서 18년 전부터 공증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증주간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방송을 비롯하여 언론매체 홍보에서부터 연극활동까지 일반인에게 공증의 이점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여 그 홍보효과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출발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공증제도의 홍보와 선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1999년 협회장님 재직 당시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드시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를 회고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어려웠고 법정단체의 필요성은 어떤 점에서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한공증협회는 1979년 12월 15일에 창립되었습니다. 변호사공증제도가 생긴 후 초기 5~6년 동안은 공증을 하는 변호사들이 따로 만든 단체는 없었고, 대한변호사협회산하의 분과위원회로 공증사무지도위원회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1976년에 서울의 변호사들만이 만든 서울공증협회라는 것이 생겼으나,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던 중 1979년 9월경에 공증하는 변호사들만의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서울공증협회는 해산하고 대한공증협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증협회의 법정단체화는 협회 창립 초기부터의 소망이고 목표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협회장을 맡을 때까지 20년 동안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법정단체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으려 할 즈음에 제가 협회장을 맡게 되어 제가 협회장 재임중에 법정단체화가 성취되어서 영광을 안게 된 것뿐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존속해온 기존의 대한공증협회가 신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고 장관의 인가를 받는 형식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법무부와 교섭해 보았으나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신법에 의한 정관작성권은 신법 공포 후 새로 만들어진 협회라야 하고, 신법 공포 이전에 있던 대한공증협회는 신법에 의한 정관작성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가 양보하고 그때 새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회원강제가입문제는 그때 법무부가 변호사의 강제가입제도도 폐지하려고 입법준비중이었던 실정이어서, 사실 말도 꺼낼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증인법은 법정임의단체인 협회를 강제회원가입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임의단체에 이어 강제단체화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장도 역임하시면서 이 부분도 많이 강조하여

오셔서 감회가 새로울실 텐데요,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회원의 강제가입이 법제화되면 협회 뿐만 아니라 공증제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 공증인법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즉, 선서인증제도나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회장님 시절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한 공증지역 확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선서인증제도는 제가 협회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고 법무부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 기타 공무소가 진술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술서에 인증을 받아오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현행의 진술서 인증은 그 작성명의인이 틀림 없다는 증명일 뿐 그 진술내용 진실여부에는 증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 진실이라는 진술인의 진술까지 인증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선서인증제도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미국 공증에 있던 제도인데 일본에서도 10여 년 전에 이미 도입하였으며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자공증제도 역시 전자기술의 발전보급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것이므로 시급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공증지역의 확대 필요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부분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십시오.

▷ 얼마전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등기의 원인증서에 인증문을 받게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법무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원인무효가 적지 않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가 변호사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신설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무소도 언젠가는 모두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

을 해 주십시오.

▷ 지난번 변호사법 개정으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새로 생길 수 없게 되고, 기존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도 개정법 공포시 구성원 변호사가 남아 있는 동안만 존속하고, 개정법 공포 당시의 구성원이 모두 없어지면 공증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여 변호사공증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신규법간에 차이가 없고,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변호사가 공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로는 안되지만 신법에 의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하고 공증인가를 받으면 공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증인의 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공증인은 국가가 내세운 증인입니다. 증인은 사실을 그대로 밝혀야하고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국가의 사법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공증인은 정직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랜 시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약력(1927. 4. 7.)

▶ 경력

1951. .	국립경찰전문학교 본과 5기 졸업
1956. 2.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59. . ~ 1965. .	전주지방법원 판사
1965. . ~ 1966. .	광주고등법원 판사(대법원 재판연구원 근무)
1966. . ~ 1970.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0. .	변호사 개업
1971. 2.	공증인가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표
1979.12. ~ 1988. 7.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1980. .	서울제1변호사회 부회장
1980.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1983.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1988. 7. ~ 1992. 4.	대법관
1992. .	변호사 개업
1993. . ~ 1996.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1998. .	대한공증협회 협회장
2002. .	대한공증협회 운영위원장
현 재	대한공증협회 운영위원

▶ 저서

판례평석집(1-11권)
소송과 경매의 법리
민사재판의 이론과 실제(1-4권)
주식경매법
주식민사소송법 1~4(공저)
주식강제집행법 1~4

▶ 수상

국민훈장 모란장(1984)
청조근정훈장(1992)